

200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 1989년 건립되어 노후된 유덕동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2. 주요골자

- 위치 : 서구 유촌동 497-1 번지 외 3필지
- 취득 : 유덕동사무소 청사 신축(건물 : 330㎡)
- 사업비 : 4억원(재원조정특별교부금)

3. 검토의견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전액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497-1 번지 외 3필지에 지상 1층의 유덕동 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동사무소 건립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391㎡(지상2층)인 현 유덕동 사무소는 1989년에 건립되어 15년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서 장소가 협소하여 대민봉사행정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주민문화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기능 이외에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등 유효공간 확보를 위한 2·3층의 시설증축이 요구되나 건립당시 차후 증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립되어 주요 구조체들이 취약하여 건물의 수직증축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서구청 소유 인접대지인 유촌동 499-1번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 증축 시까지 497-1 번지상의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등으로 활용하고, 추후 증축완료 시 기존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주차장, 조경공간 및 민원인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유덕동 지역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청사의 연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는 현재는 물론 장래의 행정수요의 양과 질 및 주민의 수, 우리 구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서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신축청사규모는 지방청사 면적산출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

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지방재정법 제77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기 수립된 관리계획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재산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민의 손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재산취득, 처분 등을 예방하면서 공유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문제점은 제출시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서는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부서는 정기분 관리계획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수시분 관리계획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덕동 사무소의 경우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4월 25일에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과 지난 5월에 서구의회 임시회가 개최된바 있었다는 점(23일~29일)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유덕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제1회 추경예산안)에 먼저 편성한 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것은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